

통학 편의 지원 및 차량 운영 지침

제정: 2009. 3.
1차 개정: 2015. 12.
2차 개정: 2016. 8.
3차 개정: 2019. 7.
4차 개정: 2020. 8.
5차 개정: 2021. 8.
6차 개정: 2022. 10.
7차 개정: 2023. 10.

2023. 10.



경상남도교육청
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

[학교지원과]

목 차

I. 목적 및 기본방향	3
II. 추진근거	3
III. 지침적용	3
IV. 통학 지원 기준	4
V. 통학 지원 신청 및 결정	5
VI. 학생통학지원위원회 운영	8
VII. 통학 지원 운영 일반 사항	10
VIII. 통학차량 관리	13
IX.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사항	16
X. 행정사항	18

【 통학 편의 지원 】

학생 통학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통학 차량 운영과 지원 기준,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·안내함으로써 통학 편의 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

I 목적 및 기본방향

-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
- 통학 차량 통합관리에 따른 차량 운영 관리 일원화 및 통학 안전성 제고
- 통학·체험활동·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차량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
- 기존 통학 차량 노선 정비 및 재배치에 따른 효율적 운영 도모

II 추진근거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- 「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」 <제정>
- 「도로교통법」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
- 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
- 「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」

III 지침적용

- 통학차량 운영 및 관리는 「도로교통법」, 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 및 교통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
- 통학버스 안전관리 및 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」 및 「통학버스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」 적용
- 본 지침은 도내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차량에 적용

IV 통학 지원 기준 <개정>

1. 통학 지원 일반

- 지원 대상: 통학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 및 학생
- (신규 신청 학교) 지원 기준 충족 시 “학생통학지원위원회”의 심의 승인 후 지원

※ (기존 통학 지원 학교) 심의 절차 생략 (단, 증차 지원은 심의 대상임)

2. 통학 지원 유형

가. 통학차량 지원

- 지원 대상 인원 12명 초과하는 경우

※ 단, 단설(거점)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2명 이하더라도 통학차량 지원 가능하며, 이 경우 인근 학교와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나. 통학비 지원

- 지원 대상 인원 12명 이하인 경우

구 분	내 용
버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·군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운행 시간을 고려하여 등·하교에 불편이 없는 경우 지원 · 버스 교통비 실제 소요액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내·시외·농어촌 버스비 × 출석일 × 2회(등·하교) -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단가 적용
택시 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학버스 임차용역비보다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·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통학버스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· 시·군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되더라도 운행 횟수가 적어 등·하교 시간과 맞지 않을 경우 · 연간 운행거리,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·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택시용역 불가
하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서·벽지 등 대중교통 및 차량으로 등·하교가 불가능한 폐지학교 학구 지역 학생 지원 · 통·폐합 당시 실제 거주,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· 통·폐합 이후 전·입학 경우,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(확인 필요) · 학생 하숙비 실비 지원(연 한도 500만원)

3. 지원 기준

가. 공립유치원

- 단설유치원: 통학차량 지원
- 농어촌 지역 병설유치원: 원거리 통학 원아수, 운행노선, 운행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함
- 거점형 유치원: 통학차량 지원

나. 초등학교

- 통·폐합, 신설대체이전(이전재배치 포함)으로 통학여건이 기존보다 저하되는 경우
- 농어촌 지역(읍·면)의 통학 학생 중 학교에서 도보 기준 1.5km 이상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탑승대상 학생 수, 운행노선, 운행횟수, 등·하교 소요시간 등을 판단하여 지원
- 과대·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구 조정에 따른 전입학교
-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학구 조정에 따른 전입학교(60명 이하, 본예산 편성 기준)

다. 중학교

- 통·폐합, 신설대체이전(이전재배치 포함)으로 통학여건이 기존보다 저하되는 경우
- 과대·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에 따른 전입학교
- 광역학구제·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과 연계하여 중학교 진학 선택권 확대
중학교 중 대중교통 기준 통학 시간 30분 이상 원거리 통학 학생
 - 통학비로 지원할 경우, 교육비특별회계로 1인당 연 400만원 지원
- 통학 여건상 아래 지역별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차량용역비 지원

지역 구분	지원 기준(학교소재지)
- 군(읍·면 지역)	·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 통학생 중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등교시간 이후 도착하는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
- 시(동, 읍·면 지역)	· 대중교통 이용 기준 5km 이상이며, 30분 이상 원거리 통학생 재학 학교로써 외부 재원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를 50% 이상 확보한 경우(차량용역비 일부 지원)

* 외부 재원: 발전기금, 수익자부담경비, 지자체 교육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아닌 재원을 의미

라. 고등학교

- 통·폐합, 신설대체이전(이전재배치 포함)으로 통학여건이 기존보다 저하되는 경우

마. 특수학교: 통학차량 지원

- ※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은 특수교육담당 부서 별도 계획에 의해 지원

4. 기타 지원 기준

-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학교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
-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 지정·운영으로 통학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·재해 발생 및 긴급한 상황에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
- 그 밖에 사정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하여 ‘학생통학지원위원회’에서 지원 기간과 내용을 정하여 결정한 경우

V 통학 지원 신청 및 결정 <신설>

1. 신청 대상

-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
- 신설 예정 유치원 및 초·중학교 중 급별 지원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신청
 - ※ 신규 지원 및 증차 대상 학교만 신청, 기존 지원 학교 심사 신청 제외

2. 신청 절차

- 학교에서 통학 지원을 신청하면 교육지원청 통학여건개선위원회에서 안건심의 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
 - ※ 단, 긴급한 사안으로 통학여건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, 위원장의 결정으로 통학 지원을 결정하여 先지원하고, 추후 학생통학지원위원회에 보고

○ 세부 절차

구분	내용
학교 → 교육지원청	▷ 학교(유치원)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 신청 - 신청 사유, 지원학생 수, 통학 지원 종류, 차량운행 예정노선,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등 첨부
교육지원청 → 본청	▷ 학교 제출 자료 확인 및 지원 필요성 검토 의견 제출 · 교육지원청 검토 결과 지원 불필요 검토 안전에 대해서는 본청 부서와 사전 협의 후 미제출 ※ 검토 의견 제출 시 포함 사항 - 통학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대상 기준 충족 여부 - 지원 요청학교의 대중교통 현황 - 지원 요청학교의 중기학생배치계획(초등학교의 경우, 통학구역 내 학령아동 수 포함) - 운행 예정 노선에 지원 요청학교 학구 외 지역 포함 여부 - 다른 학교 통학차량 공동운행 가능 여부 - 지역 내 다른 학교 차량 재배치를 통한 지원 가능 여부 -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

○ 해당 교육지원청 신청 절차

구분	내용
교육지원청 → 본청	▷ 통학여건개선위원회에서 안전 심의 후 통학 지원 신청 - 신설 예정 시기, 통학 지원 종류, 차량 운행 노선, 지원 대상 예상 학생 수 등 첨부
본청	▷ 학생통학지원위원회 개최하여 해당 안전 심의

3. 지원결정: 경상남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위원회 심사로 결정

VI 학생통학지원위원회 운영 <신설>

1. 운영 근거: 「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」 제7조

2. 위원회 구성

가. 위원 구성: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 포함, 13인 이내로 구성

-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

구분	위원
당연직 위원	행정국장, 유아특수교육과장, 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학교지원과장, 안전총괄과장
위촉직 위원	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 - 경상남도의회 의원 -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- 학교장 - 학교 운영위원

나. 위원 임기
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

3. 위원회 회의

- 정기·수시심사로 구성하되, 정기심사는 기관별 예산편성 시기·절차와 연계하여 심사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

구분	내용
정기 심사	·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전
수시 심사	· 정기심사 시점 외의 긴급한 심의 사안 발생 시 수시심사 개최 · 수시심사 주기는 인력 공백에 따른 업무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· 수시심사 절차는 정기심사 처리 절차에 준하여 진행하며, 서면심사로 같음

가. 심의 대상 안건

-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
- 통학차량의 증차에 관한 사항
- 긴급 사안에 대한 사후 심의
- 시·군을 달리하는 직영차량의 재배치
 - 단, 지역 간 상호 합의하여 직영 차량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심의 제외
-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나. 심의 절차 제외 대상

- 학교의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
- 통학차량의 감차 및 통학 지원 중단
- 동일 시·군 내 직영차량의 재배치
- 다른 학교와 임차 용역 차량의 등·하교 공동운행으로 임차계약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

다. 의견 청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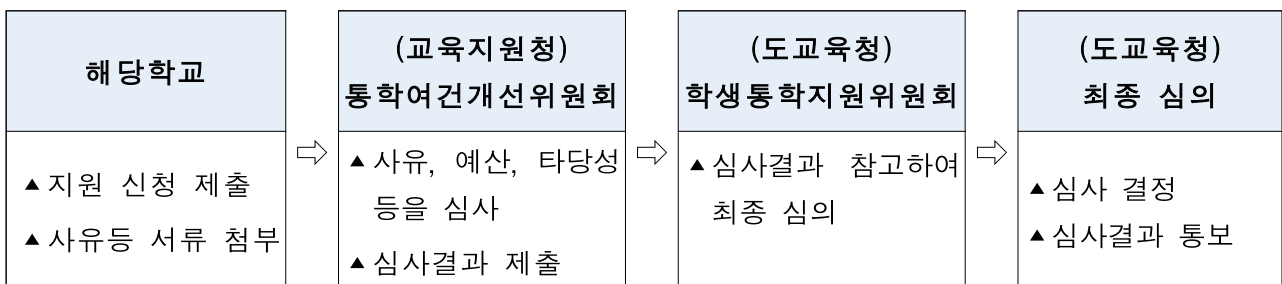
- 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4. 위원회 개의 및 의결

가. 개의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

나. 의결: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【 심사 운영 절차 】



VII 통학 지원 운영 일반 사항

1. 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

- 교육장은 통학차량 통합관리 내용을 포함한 자체 통학차량 운영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교육장은 통학차량 운영현황, 지침 및 관련법령 등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조사·점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2. 통학차량 운영

가. 학생 등·하교 운영

-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학구 내에서만 운영하여야 함. 단, 학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구를 벗어나 운영할 수 있다.
 - 교육지원청에서는 노선 점검 및 민원 접수 등으로 학구 외 지역에 통학차량 운행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해당 학교에 노선을 조정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 - 교육지원청에서 학구 외 운행으로 노선 조정을 안내하였음에도 수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- 학구 외 학생은 지원 대상 제외(공동·광역통학구역, 중학교광역학구제 포함)
- 임차(용역)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중·고등학교 중 탑승인원이 12명 이하인 경우, 해당 학교관계자, 학부모 의견, 예산 절감 등을 검토하여 운영 방식 변경(예: 통학버스 → 통학비)

나. 통학 노선 결정

- 각급 학교에서는 통학노선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운행 노선을 결정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
- 교육지원청에서 통학차량 노선 협의 및 재배치 업무 등 탄력적 운영
- 차량 이용학생의 탑승시간, 버스 승차 여유 정원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노선 변경 및 운행 횟수 조정
- 통학노선을 확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용 불편 최소화
- 학교장 및 교육장은 통학로 협소 등으로 인한 이용이 불편할 경우,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및 개선 방안 강구

3. 교육지원청 통학여건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

가. 기능

- 통학버스 운영 방법 결정(직영, 용역) 및 관내 통학차량 재배치 심의
- 통학버스 재배치 시 운행노선 변경 사항 검토
- 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여건 개선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

나. 구성

-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담당과장, 간사는 교육지원청 담당 팀장
-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
 - 유·초·중학교장, 통학버스 운전자 등
 - 지역 사정에 밝은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장 등 외부위원 포함하여 구성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

다. 임기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지역 실정에 따라 임기 조정 가능
- 위촉직 위원의 경우,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

라. 회의 운영

-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
- 안전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안전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의결에서 제척

4. 통학차량 재배치

-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통학차량에 대하여 차량별 승차 정원 대비 승차 인원 확인, 운행노선 분석, 배차시간 조정, 향후 이용 학생 수 변동 상황 등을 기초로 통학여건개선위원회 검토·결정에 따라 재배치 적극 추진
 - 통학여건개선위원회에서 재배치 대상 학교장의 의견수렴 후 재배치 반대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위원회 권한으로 재배치 할 수 있음
 -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 간 차량 전환 적극 검토
- 재배치는 2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 수 증감, 차량 승차정원 변동 등 재배치 필요 사유 발생 시 수시 재배치 가능
- 교육지원청은 재배치 후 그 결과를 본청 통학차량 관리부서에 보고

5. 통학차량 공동운행

- 노선이 일치하고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동일 기관 내 유치원 또는 초·중·고등학교와 통학차량 공동 운행
-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통학차량 승차인원을 분석하여 공동운행이 활성화 되도록 차량 재배치 추진

6. 체험활동 공동활용

- 차량 미보유 학교나 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학교에서 체험활동 등을 위해 차량 지원을 요청할 경우 차량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량 지원을 할 수 있음
- 교육지원청 통학차량 담당자는 배차신청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용한 통학차량 거리, 일정 등을 고려하여 승인 통보
- 교외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학교장은 동승보호자(보호탑승자, 인솔교사)를 반드시 탑승시켜 운행

7. 통학차량보호탑승자(교육공무직원) 노무관리

- 직영차량에 배치하는 교육공무직원 통학차량보호탑승자 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설명서를 따른다.
-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 지원
 - ※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및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급여 변경 시 별도 안내
- 통학차량보호탑승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본청 해당 직종 사업부서에서 정하며,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.
- 인력 운용 일반
 - 배치대상: 어린이통학버스(직영차량)를 운영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
 - 배치기준
 - 직영차량 수와 동일하게 배치
 - 단, 직영차량 운영 학교(유·초) 배치가 원칙이나 학교 간 공동 이용하는 경우, 해당 중·고등학교에 통학차량보호탑승자 배치 가능

- 직무 및 업무 범위
 - 차량 내 학생 안전 지도(착석 확인, 좌석안전띠 착용 지도 등)
 - 승·하차 시 안전 확보(도로횡단 동행, 승차대기 지도 등)
 -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협조(안전 확보 후 출발 등)
 - 기타 차량 탑승 등 관련하여 학교(기관)장이 지시한 사항 등 이행
- 정년 퇴직자 현황 관리 및 중도 퇴직자 보고 철저

VIII 통학차량 관리

1. 차량 관리 구분

가. 관리(운영) 방식에 따른 구분

- 직영: 학교(기관)에서 차량을 보유·관리하며, 운전직공무원 배치 및 통학 차량보호탑승자(교육공무직원) 채용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
- 용역: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 운영

나. 통합관리 차량의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

운영주체에 따른 구분	운영방법
교육지원청 통합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운영주체: 교육지원청 · 차량관리: 차량배치학교 및 교육지원청 · 예산집행: 교육지원청 · 차고지, 운전자·보호탑승자 복무: 차량배치학교 · 어린이통학버스신고: 교육지원청 또는 차량배치학교
권역별 통합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운영주체: 차량보유학교 · 차량관리, 차고지, 운전자·보호탑승자 복무: 차량보유학교 · 예산집행: 차량보유학교 · 어린이통학버스신고: 차량배치학교

※ 교육지원청 통합관리 차량은 차량배치학교 및 교육지원청 공동명의로 등록

2. 관리책임

가. 학교(기관)장

- 각급 학교(기관)에 배치된 차량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학교(기관)의 장
- 교육지원청 통합관리 교육장은 각급 학교에 배치된 차량의 총괄 책임
- 학교(기관) 장은 본 지침 및 교통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운전자와 동승보호자(통학차량보호탑승자, 인솔교사 등)에게 교통관계법령 등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- 학생과 동승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
- 통학차량 운영 시에는 반드시 동승보호자(통학차량보호탑승자, 인솔교사 등)를 탑승시켜야 한다.

나. 공동운행 이용 학교장

- 다른 학교와 등·하교 공동운행하는 경우, 이용학교장은 공동이용 학생에 대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하여야 한다.
- 공동운행으로 발생한 이용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이용학교장에게 있다.

다. 운전자

- 승차한 학생들의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후 출발, 하차한 학생들이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「도로교통법」 및 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에서 정한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-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학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할 때에는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.

라. 동승보호자(통학차량보호탑승자, 인솔교사 등)

- 차량 내 학생 안전 지도(착석확인, 좌석안전띠 착용 등)를 하여야 한다.
- 승·하차 시 안전 확보(도로횡단 동행, 승차대기 지도 등)를 하여야 한다.
-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협조(안전 확보 후 출발 등)하여야 한다.
- 유아의 경우 하원 시 보호자에게 반드시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동승보호자는 차량탑승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3. 차량관리

-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(기관)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은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한다.
- 차량관리책임자는 학교(기관)내에 지정된 주차시설(장소)을 확보하여 차량을 주차(보관)하여야 한다.
-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의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정기적으로 「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차량관리책임자는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야 하며, 자체 기술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, 사고 및 부품의 노후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및 기타 차량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차량관리책임자는 운영차량에 대해 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에서 정한 관련 서류 및 통학차량보호탑승자 일지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차량관리책임자는 용역차량 운영 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차량관리책임자는 통학차량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,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, 어린이 보호표지, 학교명 표지, 동승보호자 탑승표지, 안전수칙, 운행노선도 및 시간표, 승차대상 학생 명단 및 연락처, 비상연락망, 구급상자, 차량용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.

4. 통학차량 교체

- 「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에 의거 교체 승인
 - 최단운행연한(9년)+관용차량 1년 더 타기 및 최단주행거리 12만km 초과 경우(단, 대형차량은 최단주행거리 조건 제외)
 -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
- 직영차량 교체 구입 시 운전직공무원 및 통학차량보호탑승자 정원 수급 상황,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고려하는 등 임차차량으로 전환 및 타 기관(학교)의 차량과 재배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
- 교체 구입 차량의 차형은 관련법령 및 학생 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결정

IX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사항

1. 안전점검

가. 일반사항

- 직영 차량: 차량검사 및 정기 점검 여부, 블랙박스 백업, 차량수리 내역, 차량일지(안전운행기록 포함) 등
- 용역 차량: 통학버스 계약 사항, 차량등록증 확인,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의 성범죄 조회 사항, 계약서상의 차량과 운행상의 차량 일치 여부, 차량보험가입 내역,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등
- 하차확인장치, 후진경고음 발생장치, 경사로에 주·정차 시 고임목 설치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

나. 운행 점검

- 출발 전 차량 주위(사각지대 및 차량 밑)를 확인한 후 출발
 - 승차한 학생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
 - 학생 하차 후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
 -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학생 승·하차 시 동승보호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학생이 안전하게 승·하차하는 것을 확인
 -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, DMB 시청 및 조작 금지
 - 통학노선 및 주·정차의 적정성, 통학노선과 운행의 일치
- ※ 기타 안전점검 세부사항은 「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」에 의함

2. 안전교육

가. 법정교육(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)

- 교육대상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, 운전자, 동승보호자
- 교육주기
 - 신규 안전교육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,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이수
 - 정기 안전교육: 2년 마다 이수(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수)

나. 자체교육

- 교육지원청: 통학차량 운영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기술, 안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
- 학교: 차량이용 학생, 운전자, 동승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

3. 통학차량 안전사고 조치방법

가. 운전자의 대처요령

- 즉시 정차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,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차를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- 부상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119 및 경찰서에 사고 장소,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,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, 그 밖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
- 후속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설치, 야간에는 불꽃신호기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함
- 안전삼각대가 없을 때에는 차 뒤 트렁크를 열어 놓아야 함
- 사고현장 사진 촬영, 블랙박스 영상, 음성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

나. 동승보호자의 대처요령

- 부상자가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응급조치하여야 함
-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보도나 도로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함
- 경찰공무원이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인원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함
- 학교(기관)에 즉시 알리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함

다.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

- 사고 발생 즉시 ‘사고 개요(경위)’ 1차 유선, 2차 공문 보고
- 유·초·중학교: 교육지원청 통학버스 담당, 본청 통학버스 관리부서 및 안전총괄 담당부서로 동시 보고
- 고·특수학교: 본청 통학버스 관리부서 및 안전총괄 담당부서로 동시 보고

X 행정사항

-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매년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·시행
-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차량의 재배치, 공동운행 활성화, 교육활동 지원 등 통학차량 효율적 운영 추진
-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업무 지원을 위해 입찰에 필요한 공동 입찰 표준안, 적격심사 방법, 원가계산 등을 제공
- 본청 통학차량 담당부서는 통학차량 운영에 관한 지침 및 관련 법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